

- ① 한글로 작성할 경우 양쪽 정렬을 해서 글의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좋음.
- ② 전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을 잘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본론 또한 내용에 따라 장과 절을 구분하여 논의를 개진한 점은 좋음.
- ③ 반론과 재반론은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론의 장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임.

국제협약의 준수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이름 : 김보현

학번 : 202111664

학과 : 뷰티디자인경영학과

과목명 : 대학글쓰기

제출일 : 2021. 12. 11

목차

서론

1. 인류가 남긴 발걸음

본론

2. 국제협약,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
3. 험난한 과정 속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4. 실효성이 낮아지는 국제협약
 - 4.1 경제가 중요할까, 생명이 중요할까
 - 4.2 앞과 뒤가 다른 일본
 - 4.3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달려들다
5. 반론과 재 반론
6. 앞으로의 국제협약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결론

7. 이제는 우리가

서론

1. 인류가 남긴 발걸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환경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등 문명의 요람의 주위에는 큰 강이 존재하였으며, 인류는 이에 의존하며 살아나갔다. 또한, 주변 환경에 따라 문명의 주식이 달랐으며 삶을 영위하는 방법 또한 제각각이었다. 이처럼, 환경은 인류의 존립 및 성장과 함께했다. 그러나, 인류의 존립 및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은, 인류의 멸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례로 한국인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인 배추김치와 커피의 원재룻값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상기후

로 인한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¹

이처럼 이상기후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류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지구의 자정 능력이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일부분을 뚫을 수는 있으나, 모든 온실가스를 해결할 수는 없기에 머지않아 지구의 자정 능력은 밀천을 드러낼 것이고 이상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노력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최초로 채택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기후변화협약이 최초로 채택되었을 때보다 나빠졌다. 기후변화협약이 제대로 준수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본 글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품은 것을 시작으로, 다사다난했던 기후변화협약의 변화를 서술하고 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의 사례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미래 기후변화협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2. 국제 협약,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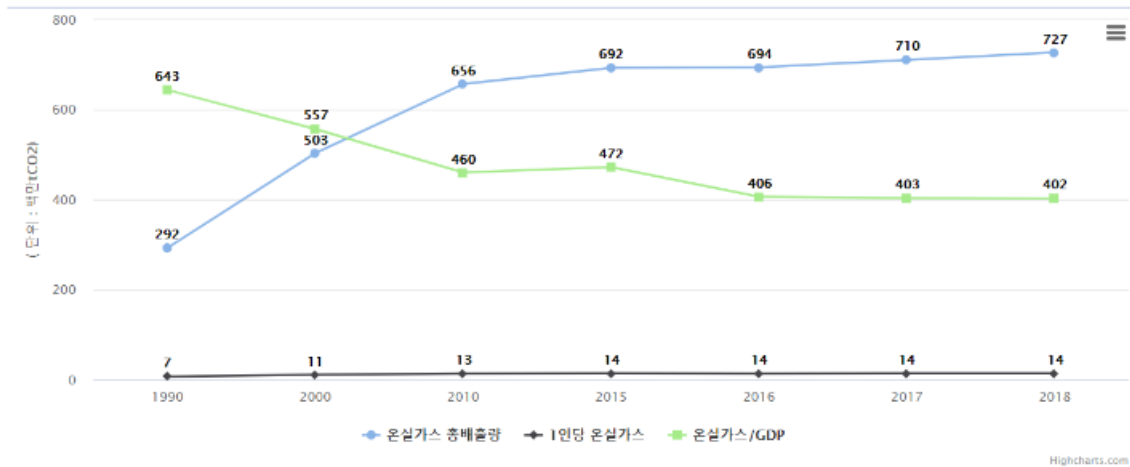
그동안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여러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으며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을 이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역으로 인류의 생존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등의 형태로 인류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피해의 한 예로, 전 세계적으로 폭염, 산불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2019년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또한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² 또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대구의 특산물 이던 사과가 10년 동안 강원도 지역에서의 재배 면적이 5배 가까이 증가했고, 프랑스 와인의 출하량이 25~50% 감소했으며, 캐나다에서 옥수수가 수확 가능하게 되는 등, 전체적인 농작물의 재배지가 북쪽으로 이동하여 농작물 지형도가 바뀌는 것³과 같이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¹ KKIDI 국민영양통계 “다빈도 음식”, 2021년 12월 9일 접속, <https://www.khidi.or.kr/kps/dhraStat/result15?menuId=MENU01669&year=2019>

² 아이뉴스24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전 세계 대형산불 자주 발생한다”, 2021년 4월 5일 수정, 2021년 12월 9일 접속, <http://naver.me/FwneGQvw>

³ 극지연구소 “기후변화가 세계 작물 지도를 뒤바꾸고 있다!? (feat.농업인의 날)”, 2021년 11월 11일 수정, 2021년 11월 18일 접속, <https://blog.naver.com/kopriblog/222564281450>

이처럼 인류가 야기해 온 기후 및 환경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하자 사회적·국제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사회, 국제단위로 다양하게 환경 및 기후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이 채택되었다.



199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파란 선 - 온실가스 총 배출량, 초록색 - 온실가스, GDP)⁴

3. 험난한 과정 속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약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약은 여러 난관을 넘어야 비로소 채택된다. 이번 장에서는 기후 국제 협약의 변천사를 말해보고자 한다.

우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선진국을 중점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야심 차게 채택된 국제협약이었으나,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

⁴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21년 11월 115일 접속, 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601.do

성을 띠고 있지 않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의심받았다.

이후 1995년, 각국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개최되었으나 감축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규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보기 좋은 말뿐인 협약으로 남아있었다. 이렇듯 보기 좋은 시작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잘 준수되지 않자,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 Thi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교토의정서⁵를 채택하여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부속서 1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국가들로,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오랫동안 공업화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느라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권이 감축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론에 입각해 정해졌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 문제로 심한 대립이 생겼고,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문혀 갔다.

이후 2005년이 되어서야 교토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험난했던 교토의정서 발효 과정을 겪고도 2009년에 개최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해 논의한 Post-2012 협상은 감축 의무, 자원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국가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The eighte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제2차 감축 공약 기간인 2013년부터 2020년 동안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25%~4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시간이 흘러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변화협약의 등장 필요성이 높아지자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The twenty-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4. 실효성이 낮아지는 국제 협약

국제협약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요인은 구속성의 부재, 달성 불가능한 목표 설정, 빈틈 있는 협약 설계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참여국들의 부재와 비협조적 태도이다. 국가들의 참여가 없다면 국제협약은 절대로 추구하는 목표에 다가설 수 없다. 이번 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

⁵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2021년 11월 15일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btnPrint

과 관련하여 비협조적에서 나아가 국제협약 탈퇴라는 모습을 보여준 국가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4.1. 경제가 중요할까, 생명이 중요할까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몇몇 국가들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이다.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먼 훗날 인류가 사는 지구에서 인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체가 절멸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채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1년 12월 12일, 캐나다는 교토의정서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협약이라고 지적하며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탈퇴 배경에는 경제적 요소가 숨어있었다.⁶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캐나다의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시 캐나다는 세계 4위 산유국이자 매장량은 세계 3위 수준이었으며 현재에도 그렇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캐나다의 원유 매장량의 98%는 오일샌드이며, 이러한 오일샌드는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나 유가 상승으로 인해 당시 캐나다 정부는 오일샌드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오일샌드 개발을 경제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당시 오일샌드 산업은 향후 10년간 GDP를 약 1조 2천억 캐나다 달러만큼 증가시키고, 고용자 수도 640만 명 증가하도록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따라서 오일샌드 산업은 캐나다 정부 세입과 고용, 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었다. 그러나, 오일샌드 개발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반 원유보다 10~40% 많기 때문에 향후 개발 시 많은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였다. 특히나, 오일샌드가 생산되는 앨버타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8년 기준 캐나다 전체 배출량의 33.3%를 차지하고 있어 오일샌드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은 누구 하나도 반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오일샌드를 개발하여 자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효성 유무를 명분으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다. 이렇듯 미국 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워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고, 러시아도 불참하여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가 불참하게 되었다.

⁶ 오민아, 서정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쪽~10쪽

4.2 앞과 뒤가 다른 일본

방금까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국가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는 척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국가의 사례를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외적으로 일본은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이후에도 유럽연합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과 자국 산업 발전 저해의 이유로 환경세 혹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산업계는 정부의 규제적·강제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행동 원칙을 선호했다.⁷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만 교토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할 뿐,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교토의정서 준수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하여 기후 변화를 가속하는 데에 한몫하였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분명 전 지구적 문제이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일본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4.3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달려들다

교토의정서에서 의무 감축 국가로 분류되는 선진국은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개발 및 제조업 발달 등으로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역사적으로 환경오염을 더 많이 발생시켰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책임이 더욱더 무거웠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수준 및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논의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역사적인 환경 오염의 정도, 환경 오염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 수준, 기후 변화 대응에 사용될 재정적 능력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큰 과제였다. 이를 해소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류가 공유하는 환경의 보호책임은 인류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책임의 정도는 환경 손상에 영향을 미친 정도와 국가의 능력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으로 정하였다. 즉,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국제환경법 규범의 발전과 적용 및 해석에 있어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요구가

⁷ 김호섭, 김현식,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 대응」, 『日本研究論叢』 제33호, 96쪽~122쪽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원칙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국제의무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차별적 공동책임의 구성 요소 중 현재의 기후변화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발행위 및 환경오염행위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산업화의 수혜자이자 환경오염의 주체인 선진국이 과거 환경오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을 제시하며 선진국만 의무 감축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적 책임은 1990년대 환경협상을 준비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준비된 카드였으며, 개발도상국이 의무 감축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선진국과의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의 동참에 끈질기게 반대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감축 의무의 부담은 거부하면서도 선진국은 지속 불가능한 생산패턴과 소비패턴으로써 세계의 천연자원을 과잉 사용하였고, 지구환경에 해악을 끼쳐 개발도상국에게 손해를 입혀왔다는 등 역사적 책임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적응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이유로 경제 원조와 기술 이전을 요구하였다. 결국, 개발도상국은 비감축의무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경제 및 기술 원조를 받게 되었다. 의무 감축 부담과 경제 및 기술 원조의 부담을 지는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 중 몇몇 국가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비감축의무 국가로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협약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5. ~~반론과 재 반론~~

필자는 본 글에서 역사적 책임을 앞세워 온실가스 의무 감축의 부담을 회피했던 개발도상국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역사적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이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가?" 물론 잘못을 거의 저지르지 않은 국가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환경 보존에 대한 국제법규범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법조차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에는 선진국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국제의무는 없었다. 국제법위원회는 국가책임이 과거에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 즉 과거에는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의 국제법을 소급 적용하여 책임을 묻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과거 선진국의 행위에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

⁸ 서원상,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법학연구』, 제37집(2012), 1쪽~22쪽

럽다.⁹ 그렇지만 역사적 책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라도, 그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의무 차별화를 토대로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 의무 부담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누군가는 경제적 능력이 뒤떨어지는 개발도상국에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의무감축을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경제적 능력 차이가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추후 환경 및 기후 문제 대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부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 도입 및 선진국의 지원금으로 경제 성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결국 기후 및 환경 문제가 악화되면 직격탄을 맞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므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의무감축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나친 경제 성장 저하를 막기 위하여 구속성 정책은 개발도상국인 만큼 오염자부담원칙을 따른 의무 차별화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주 에너지 생산 방식이자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인 화력 에너지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 발전 메커니즘을 통해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추후 닥칠 기후 및 환경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 매우 나은 선택이다.

6. 앞으로의 국제 협약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개발도상국 중 몇몇 국가는 경제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중국과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각각 세계 1위와 3위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매우 증가하였다. 비록 개도권의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선진권과 비교해 매우 적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과 인도는 세계 1위, 3위의 거대 배출국이고, 개도권의 배출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권이 노력을 아끼지 않더라도 개도권의 참여 없이는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¹⁰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개도권도 의무 감축의 부담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11월 4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The twenty-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의 체제가 마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구속성이 강하지 않고, 비적대적·비구속성을 원리로 하고 있어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⁹ 서원상,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법학연구』, 제37집(2012), 1쪽~22쪽

¹⁰ 신연재, 「포스트 교토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2014), 327쪽~350쪽

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의심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6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 우선과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UN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또한 가입국이 되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구속성과 제재 방안이 없는 협약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국제법에 의하면 당사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의무 위반국에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구 환경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제 환경 협약들은 그 의무가 당사국 사이에 상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준)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조약의 목적을 실효성으로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대국민 인식 확산과 탄소세, 온실가스 거래제, 온실가스 거래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과 심각성 인지가 필요하며, 구속성을 띠는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즉, 촉진과 구속, 두 단어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

7. 이제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자국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야하는 각국의 정부로서는 기후변화협약을 비준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¹¹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후변화협약을 비준수하는 국가는 규탄되어야 마땅하지만, 자국의 경제적 성장, 즉 국민 소득 향상 및 복지 수준 성장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기후변화협약을 비준수하는 것이 더 환호받을 일이다. 그러나, 미래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 그렇기에 기후변화협약에 구속성과 강제성을 넣어 기후변화협약을 비준수하거나 탈퇴하는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편이 합리적이거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동시에 대상을 바꿔야 한다. 대상을 바꾼다는 말은, 국가가 아닌 국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촉진한다면 결국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그렇기에 각국의 정부에게 탄소세, 온실가스 거래제, 온실가스 거래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¹¹ 임형록, 정석균, 「교토 의정서와 CO2 감축의무 대상국의 시장 충격」, 『한국기업경영학회』 제18권 제1호(2011), 221쪽 ~239쪽

제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국민 인식 확산,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등으로 국민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적절한 구속성과 강제성을 추후 채택될 기후변화협약에 녹여 국가가 나서 국민의 행동을 이끌어내 나가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최평순, 『인류세 : 인간의 시대』, 해나무, 2020, 99쪽~160쪽

논문

- 신연재, 「포스트 교토 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2014), 327쪽~350쪽
- 김영신, 「교토의정서의 미국 불참이 국제기후변화 레짐의 실효성에 미친 영향:국가별 CO2 배출 증가율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43권 제2호(2009), 335쪽~358쪽
- 임형록, 정석균, 「교토 의정서와 CO2 감축의무 대상국의 시장 충격」, 『한국기업경영학회』 제18권 제1호(2011), 221쪽~239쪽
- 김호섭, 김현식,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 대응」, 『日本研究論叢』 제33호, 96쪽~122쪽
- 오민아, 서정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쪽~10쪽
- 박병도, 「국제 환경 협약의 이행 및 준수 메커니즘, 비준수 절차를 중심으로」, 『環境法研究』 제36권3호(2014), 64쪽~92쪽
- 서원상,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법학연구』, 제37집(2012), 1쪽~22쪽

인터넷 자료

- 코다 CODAA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배경, 내용, 한계점 정리”, 2020년 11월 30일 수정, 2021년 11월 20일 접속, <https://blog.naver.com/codaaxyz/222158425052>
- Yumth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020년 4월 23일 수정, 2021년 11월 20일 접속, <https://blog.naver.com/dbal12365/221922729793>
- 극지연구소 “기후변화가 세계 작물 지도를 뒤바꾸고 있다!? (feat.농업인의 날)”, 2021년 11월 11일 수정, 2021년 11월 18일 접속, <https://blog.naver.com/kopriblog/222564281450>
-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2021년 11월 15일 접속,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btnPrint
- KOSIS 국가통계포털 “온실가스 배출량”, 2021년 9월 30일 수정, 2021년 11월 20일 접속,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RTITLE&menuId=M_02_01&outLink=Y&entrType=#
- KKIDI 국민영양통계 “다빈도 음식”, 2021년 12월 9일 접속, <https://www.khidi.or.kr/kps/dhraStat/result15?menuId=MENU01669&year=2019>
- 아이뉴스24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전 세계 대형산불 자주 발생한다”, 2021년 4월 5일 수정, 2021년 12월 9일 접속, <http://naver.me/FwneGQvw>
- EG-TIPS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 플랫폼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21년 11월 115일 접속, 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601.do